

『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박 종 우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,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-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(안 제5조)
- 관계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사무의 위탁 사항 규정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고용정책 기본법」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,
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「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」은

-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및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·단체와의 협력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